

의안번호	2202654
의 퇴 인	문대림의원
회 답 일	2024. 7. 4.
추계번호	24D0493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-희생자의 정의에 ‘구금되었던 사람’을 추가 :제주4·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,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(受刑人)으로서 제5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·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거나 <u>구금되었던 사람</u>	의무규정
2	안 제16조(보상금)	-국가가 희생자 이외에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함 -희생자에 대한 지급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-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유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유족이 받는 보상금 합계의 한도액은 위원회 결정 지급금액을 넘어설 수 없음	의무규정
3	안 제24조(기념사업 등)	-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념사업 등에 제주4·3사건 기록의 홍보·활용, 제주4·3사건 관련 국내외 인권 단체와의 교류·협력을 추가함	재량규정
4	안 제24조의2 신설(제주4·3복지의료재단의 설립 및 출연 등)	-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4·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의료지원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6조(보상금)	
3	안 제24조(기념사업 등)	
4	안 제24조의2 신설(제주4·3복지의료재단의 설립 및 출연 등)	

2. 상세 사유

□ 희생자의 정의 확대(안 제2조)

- 개정안은 희생자의 정의에 ‘구금되었던 사람’을 추가하려는 것임
 - － 현행법¹⁾은 ‘희생자’를 제주 4·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·행방불명된 사람,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(受刑人)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2항²⁾에 따라 제주 4·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의함
 - － 구금되었다가 수형인(受刑人)으로서 제주 4·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‘희생자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, 구금되었다가 풀려나는 등의 이유로 희생자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
-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희생자 수 증가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재 시점에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구금 사실이 있는 사람 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 희생자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
 - － 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제주4·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(이하 “제주 4·3사건위원회”라 함)에서 2024년 1월까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 수는 14,822명임

□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(안 제16조)

- 개정안은 희생자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³⁾하려는 것임
 - － 현행법⁴⁾에 따라 희생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사망·행방불명의 경우 9천만

1) 현행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제주4·3사건"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.

2. "희생자"란 제주4·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,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(受刑人)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·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
3.~5. (생략)

2) 현행법 제5조(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) ① 제주4·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,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·결정하며,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제주4·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

2.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
3.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

4.~15. (생략)

③~⑨ (생략)

3) 개정안 제16조 단서에서 유족이 다수인 경우 보상금 합계의 한도액이 1인이 받는 보상금액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유족의 수에 따라 지급금액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

4) 현행법 제16조(보상금)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

원, 휴유장애의 경우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등급·노동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등임

- 개정안은 유족에게도 희생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총액에 준하는 수준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 발생하게 됨
- 다만,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아직 진행 중어서 제주4·3위원회가 결정할 보상금 지급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
- 사망·행방불명 희생자를 제외하고 휴유장애,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제주4·3위원회의 결정은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, 수형 또는 구금일수,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희생자별 지급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움
-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이며, 2024년 1월 기준 3,840명의 희생자에게 3,370억원을 지급 결정하였음⁵⁾

□ 지원대상 기념사업 범위 확대(안 제24조)

- 개정안은 현행법⁶⁾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념사업 등에 제주4·3사건 기록의 홍보·활용, 제주4·3사건 관련 국내외

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회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,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: 9천만원
2. 휴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: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
3.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: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. 다만,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,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.
 - 가.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: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. 다만,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: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

②~⑦ (생 략)

- 5) 행정안전부는 제주4·3피해보상(2431-306) 세부사업으로 배상금(310-02)을 2022년부터 집행 중이며, 2022년 615억 6,000만원, 2023년 1,835억 4,800만원을 집행하였음. 2024년 예산은 1,935억 5,400만원임
- 6) 현행법 제24조(기념사업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 1. 추념 행사의 거행
 2. 위령공원·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·사료관 건립
 3. 제주4·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·관리
 4. 제주4·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
 5. 그 밖의 제주4·3사건 관련 기념사업

인권 단체와의 교류·협력을 추가함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기념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념사업 지원 비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각 기념사업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

□ 제주4·3복지의료재단에 대한 출연·보조근거 신설(안 제24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제주4·3복지의료재단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 - － 개정안에 따르면, 제주4·3복지의료재단은 제주4·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, 복지지원 및 의료지원을 위한 재단으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 시점에서는 출연 또는 보조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